

#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서울 시민들의 난치병 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시설로서
- 나. 의료분야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제대혈관련 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,  
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(의회동의 및 보고)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(2006. 5. 11. 개소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0 보라매병원 1,10,11층
- 시설규모 : 건물 3,089㎡(1층 200㎡, 10층 2,129㎡, 11층 760㎡)
- 인력 : 현원 9명 - 은행장 1명, 의료관리자 3명, 관리직원 5명
- 현 수탁자 : 서울대학교병원(대표 정희원)
- 위탁기간 : 2019. 2. 1 ~ 2022. 1. 31(3년간)

## 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2. 2. 1 ~ 2025. 1. 31)
- 위탁업무
  - 기증제대혈 확보에 관한 사항
  - 기증 받은 제대혈의 검사, 처리, 보관, 공급,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
  - 기증제대혈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
  - 국내·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소요예산 : 519,800천원(2021년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## 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-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14조(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)
  -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(관리·운영의 위탁)
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민간위탁 추진현황
  - '07. 1. 1. ~ '09.12.31.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위탁(보라매병원 재위탁)
  - '10. 1. 1. ~ '12.12.31. 서울대학교병원 위탁
  - '13. 1. 1. ~ '15.12.31.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(공개모집)
  - '16. 2. 1. ~ '19. 1.31. 서울대학교병원 재계약
  - '19. 2. 1. ~ '22. 1.31. 서울대학교병원 재위탁(공개모집)

## 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이용한 시민들의 난치병 치료와 고령화·기후변화·방사능피폭 등에 따른 새로운 질병발생시 치료제 개발·연구에 대한 의료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
- 또한 현재 제대혈은행 운영 및 국제교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,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의료분야의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 법률 관한 법률 제4조, 제14조제1항

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제대혈 기증 및 이식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대혈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제대혈은행의 업무위탁)** ① 제대혈은행은 제대혈관리업무 중 채취 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제1항 제3호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 내용) 제5호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5. 시립병원, 보건·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'22년도 예산편성 필요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시립병원운영팀 서재룡 (☎2133-7515)